 질병관리청		<h1>보 도 참 고 자 료</h1>	
배 포 일	2021. 1. 23. (총 31매)	담당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조 우 경	전 화	043-719-7680
담 당 자	최 상 미, 최 은 경		043-719-936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2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3명,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4,692명(해외유입 6,089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7,48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6,700건(확진자 73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4,184건, 신규 확진자는 총 431명이다.
-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629명으로 총 62,044명(83.07%)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1,31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97명, 사망자는 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337명(치명률 1.79%)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3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403	119	33	21	12	6	1	2	1	113	5	4	17	7	9	18	32	3
누계	68,603	22,470	2,421	8,103	3,451	1,372	913	834	150	17,581	1,536	1,412	1,830	917	646	2,729	1,752	486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3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8	0	10	6	10	2	0	12	16	16	12
누계	6,089 ¹⁾	34 (0.6%)	2,779 (45.6%)	1,044 ¹⁾ (17.1%)	1,978 (32.5%)	232 (3.8%)	22 (0.4%)	2,644 ¹⁾ (43.4%)	3,445 (56.6%)	3,325 (54.6%)	2,764 ¹⁾ (45.4%)

* 아시아(중국 외) : 인도 2명(2명), 러시아 1명(1명), 인도네시아 4명(4명), 일본 1명, 아랍에미리트 2명, 유럽 : 영국 2명(1명), 폴란드 1명, 체코 1명(1명), 불가리아 1명, 노르웨이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9명(2명), 캐나다 1명, 아프리카 : 이집트 1명, 나이지리아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¹⁾ 중복 집계 오류 정정 : 검역 -1명(1.21일 0시 기준, (추정)유입국가:유럽 -1/ 확인단계:검역단계 -1/ 국적:외국인 -1)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22.(금) 0시 기준	61,415	11,518 ¹⁾	299	1,328
1.23.(토) 0시 기준	62,044	11,311	297	1,337
변동	(+)629	(-)207	(-)2	(+)9

* 1월 22일 0시부터 1월 2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¹⁾ 중복 집계 오류 정정 : 검역 -1명(1.21일 0시 기준)

□ 1월 23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1월 2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3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84명), 수도권에서 244명(60.5%) 비수도권에서는 159명(39.5%)이 발생하였다.

(주간 : 1.17일~1.23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1.23일(0시 기준)	403	244	23	22	39	67	5	5
주간 일 평균	384.0	264.9	17.4	20.6	24.7	44.9	8.9	2.7
주간 총 확진자 수	2,688	1,854	122	144	173	314	62	19

○ 수도권

(주간 : 1.17일~1.23일, 단위 : 명)

구분	1.17.	1.18.	1.19.	1.20.	1.21.	1.22.	1.2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350	244	241	275	277	223	244	264.9	1,854
서울	142	128	95	135	122	113	119	122.0	854
인천	35	13	18	14	22	8	12	17.4	122
경기	173	103	128	126	133	102	113	125.4	878

- (서울 강북구 아동시설 관련) 1월 20일 이후 격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 (구분) 이용자 2명(지표포함), 종사자 7명, 가족 10명(+4), 자원봉사자 6명(+1)

- (서울 강남구 사우나 관련) 1월 22일 이후 격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 (구분) 이용자 11명(지표포함, +1), 종사자 2명, 가족 7명, 지인 1명

- (경기 파주시 제조업 관련) 1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직원 5명(지표포함), 가족 4명, 어린이집 관련 5명

* (추정감염경로) 직장 → 어린이집

○ 충청권

(주간 : 1.17일~1.23일, 단위 : 명)

구분	1.17.	1.18.	1.19.	1.20.	1.21.	1.22.	1.2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17	23	22	10	18	9	23	17.4	122
대전	3	2	7	1	-	1	1	2.1	15
세종	1	2	3	0	1	0	1	1.1	8
충북	7	8	5	2	7	1	4	4.9	34
충남	6	11	7	7	10	7	17	9.3	65

- (충남 천안시 우체국 관련)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구분) 종사자 2명(지표포함), 가족 2명, 지인 4명(+2)

○ 호남권

(주간 : 1.17일~1.23일, 단위 : 명)

구분	1.17.	1.18.	1.19.	1.20.	1.21.	1.22.	1.2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34	18	15	22	24	9	22	20.6	144
광주	14	11	7	11	5	2	6	8.0	56
전북	5	3	2	2	5	-	7	3.4	24
전남	15	4	6	9	14	7	9	9.1	64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 1월 20일 이후 격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0명이다.

구분	계	환자/입소자	종사자 (지표환자 포함)	가족/지인	기타
1.20일 누계	156	106	32	16	2
금일 누계	160(+4)	110(+4)	32	16	2

○ 경북권

(주간 : 1.17일~1.23일, 단위 : 명)

구분	1.17.	1.18.	1.19.	1.20.	1.21.	1.22.	1.2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30	31	23	18	15	17	39	24.7	173
대구	15	13	15	11	7	5	21	12.4	87
경북	15	18	8	7	8	12	18	12.3	86

- (대구 북구 스크린골프장 관련) 1월 1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구분) 지표환자(종사자), 방문자 5명, 지인 1명, 가족 1명

- (경북 포항시 목욕탕 관련)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 (구분) 방문자 9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지인 4명

○ 경남권

(주간 : 1.17일~1.23일, 단위 : 명)

구분	1.17.	1.18.	1.19.	1.20.	1.21.	1.22.	1.2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65	34	33	33	36	46	67	44.9	314
부산	32	9	17	12	19	23	33	20.7	145
울산	15	5	5	3	2	2	2	4.9	34
경남	18	20	11	18	15	21	32	19.3	135

- (부산 해운대구 교회 관련) 1월 21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구분) 교인 7명(지표포함)

- (경남 거제시 요양서비스 관련)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 (구분) 가족 3명(지표포함), 재가방문센터 관련 6명, 지인 7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항체치료제 임상3상과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혈장 치료제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 항체치료제 개발 관련, 제약사는 조건부 승인을 신청('20.12.29)하여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사 중이며, 최종 허가심사 결과에 따라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 치료제 허가 전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이 1건** 승인되었다.
 - * 임상시험자가 외부의 의뢰없이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또는 허가(신고)되어 시판중인 의약품으로 허가(신고)되지 않은 새로운 효능 효과, 새로운 용법 용량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
 - ** 코로나19 경증 및 중등도 20명 대상 / 인천의료원, '21.1.13
 - 또한,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영국·남아공 변이주를 확보('21.1.21) 하였으며 항체치료제의 효능을 세포주 수준에서 평가 할 계획이다.
 - 혈장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32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며,
 - 혈장공여등록자는 6,583명, 혈장모집이 완료된 자는 4,145명 ('21.1.22기준)이다.
 - * (치료목적 사용 승인제도) 다른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115개 병원 3,813명 (1.23일 0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하였다.

-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지난 12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모더나社 스테판 반셀 대표이사 간 면담에 따른 실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 1월 25일(월) 오후 10시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와 스테판 반셀 모더나 대표이사 간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화상회의를 통해 신속개발이 가능한 mRNA 백신 관련 기술 협력 및 공동연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감염병연구소와 미국 모더나社 간 협력의향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의 신고 사례를 공유하고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하였다.
 -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
 - 최근 쇼핑몰, 아울렛 등 대형매장 관련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신고되었다.
 - △의자에 한칸띄기 등 거리두기 관련 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나, 고객들은 미준수, △한정판매 행사장에서의 사람간의 밀접 접촉, △향수코너에서 다수가 마스크를 벗고 시향하는 사례 등이 신고되었다.
 - 설 연휴 및 신학기 준비 등으로 대형매장 이용의 지속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 대형매장 사업주·이용자들에게 △마스크 지속 착용, △사람간 거리두기, △시식·시음 금지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요청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 위기를 국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오늘도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방역 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대면 종교활동이 재개되는 첫 주말로, 종교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로 방역의 모범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국민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요청하였다.

- 첫째,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모임, 행사는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한다.

- 둘째,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대면 식사, 음주, 흡연과 같은 상황은 가급적 피한다.

-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는다.

-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의심 환자 또는 호흡기 증상 환자가 방문할 경우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하여,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 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5. 설 연휴 생활방역수칙
6. 「감염병 보도준칙」 (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2.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3.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4.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5.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6.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7.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8.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9.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0.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1.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6.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7.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8.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1 일일 확진자 현황 (1.23. 0시 기준, 74,692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20.1.3일 이후 누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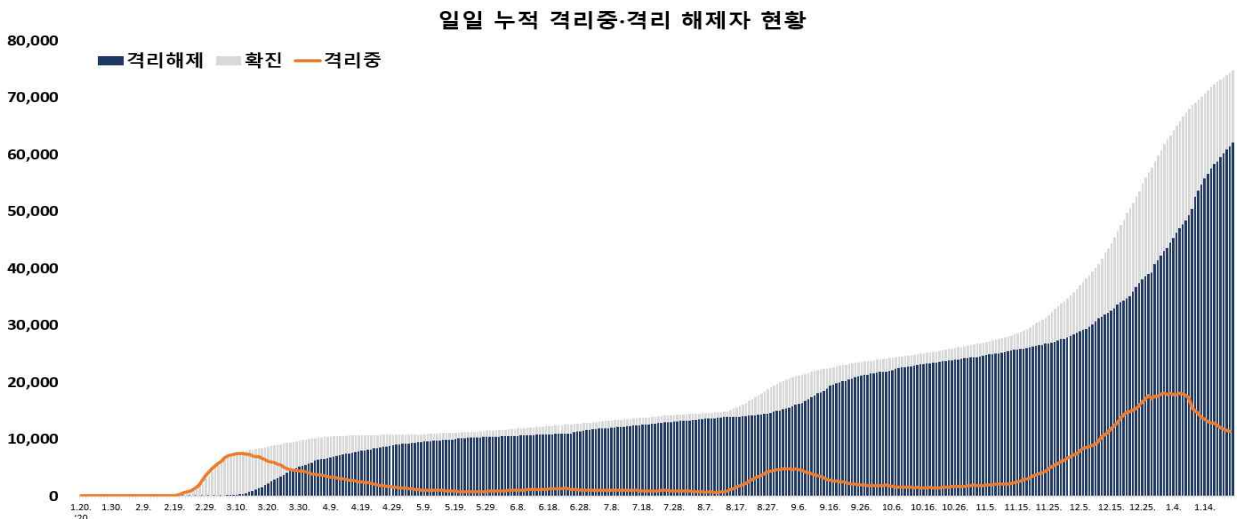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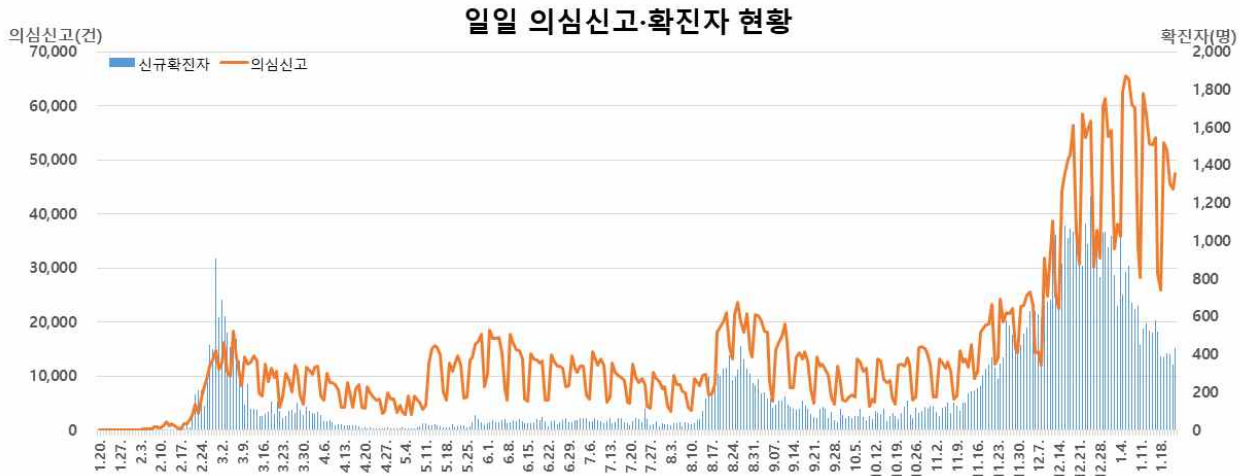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2.(금) 0시 기준	5,282,223 ¹⁾	74,261 ¹⁾	61,415	11,518 ¹⁾	1,328	133,132	5,074,830
1.23.(토) 0시 기준	5,329,707	74,692	62,044	11,311	1,337	136,629	5,118,386
변동	+47,484	+431	+629	-207	+9	+3,497	+43,556

* 1월 22일 0시부터 1월 2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¹⁾ 중복 집계 오류 정정 : 검역 -1명(1.21일 0시 기준)



② 지역별 확진자 현황 (1.23. 0시 기준, 74,692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119	8	23,224	(31.09)	238.60
부산	33	0	2,530	(3.39)	74.15
대구	21	1	8,223	(11.01)	337.49
인천	12	0	3,640	(4.87)	123.13
광주	6	1	1,478	(1.98)	101.46
대전	1	0	960	(1.29)	65.12
울산	2	0	911	(1.22)	79.42
세종	1	0	174	(0.23)	50.83
경기	113	4	18,888	(25.29)	142.55
강원	5	1	1,596	(2.14)	103.60
충북	4	0	1,493	(2.00)	93.35
충남	17	0	1,960	(2.62)	92.35
전북	7	0	1,009	(1.35)	55.52
전남	9	1	709	(0.95)	38.02
경북	18	0	2,851	(3.82)	107.08
경남	32	0	1,886	(2.53)	56.11
제주	3	0	516	(0.69)	76.93
검역	0	12	2,644 ¹⁾	(3.54)	-
총합계	403	28	74,692 ¹⁾	(100)	144.06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 중복 집계 오류 정정 : 검역 -1명(1.21일 0시 기준)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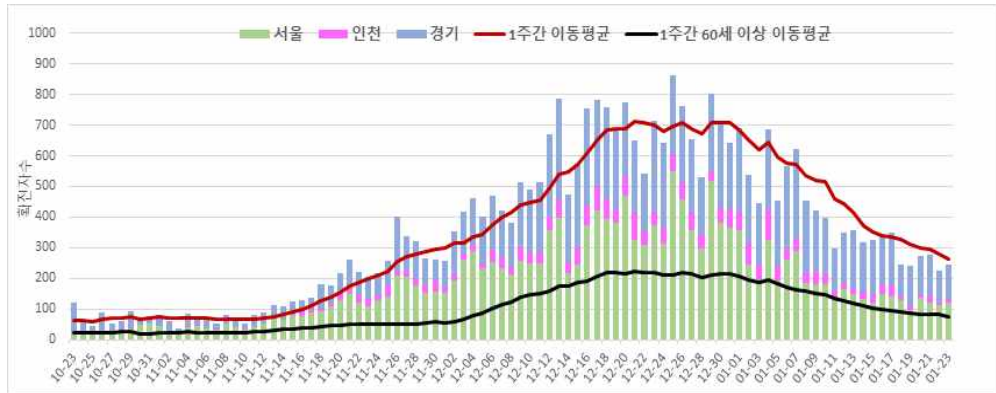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격리 중	11,311	4636	438	164	470	182	43	86	16	3,247	224	244	168	92	130	211	265	31	664
격리해제	62,044	18,294	2,005	7,853	3,125	1,281	905	789	157	15,234	1,343	1,198	1,760	875	573	2,576	1,614	485	1,977
사망	1,337	294	87	206	45	15	12	36	1	407	29	51	32	42	6	64	7	0	3
합계	74,692	23,224	2,530	8,223	3,640	1,478	960	911	174	18,888	1,596	1,493	1,960	1,009	709	2,851	1,886	516	2,644

* 1월 22일 0시부터 1월 2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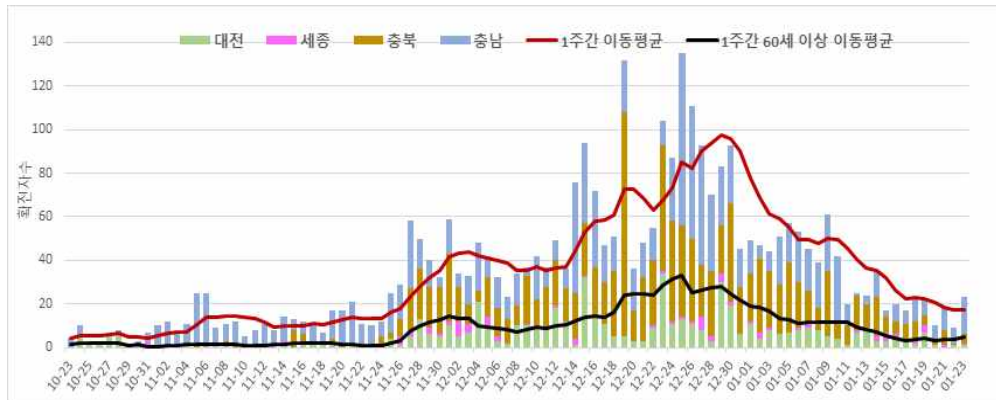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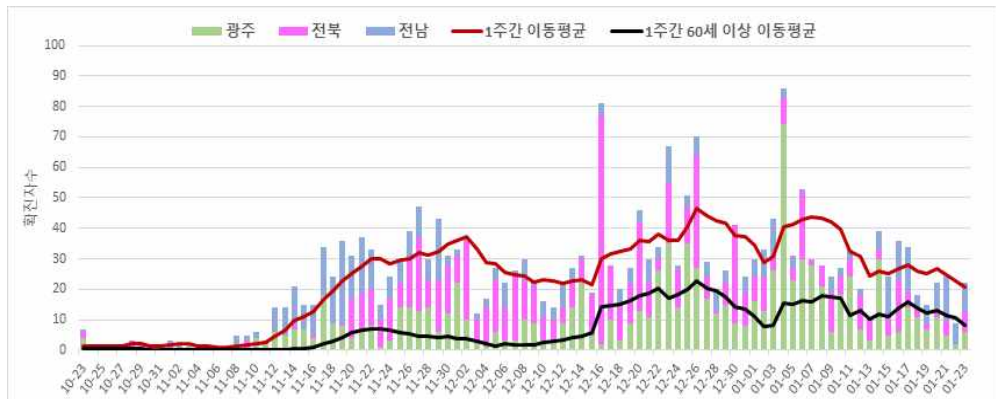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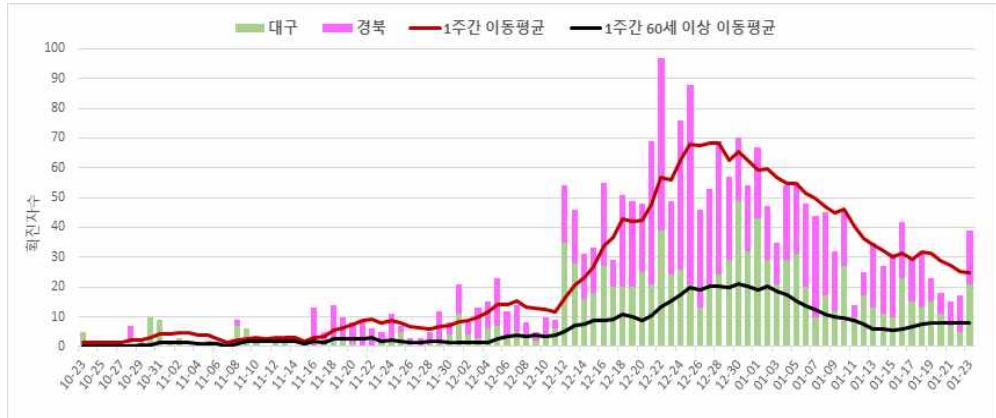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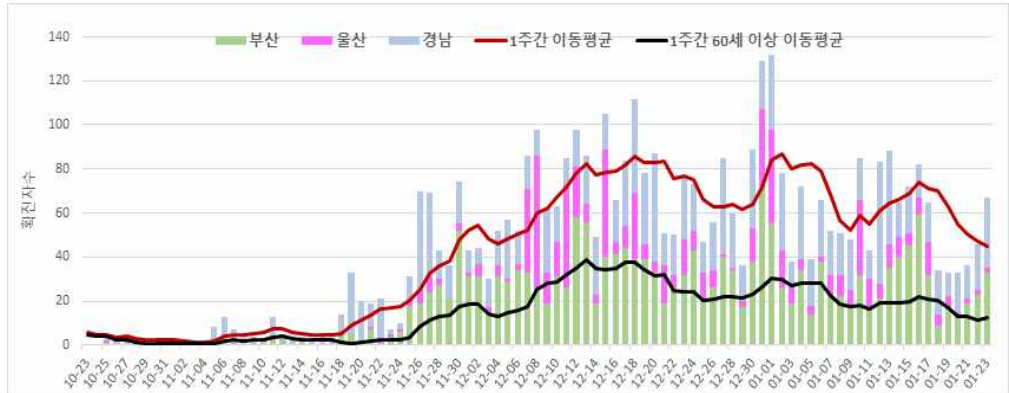


경북권
(대구, 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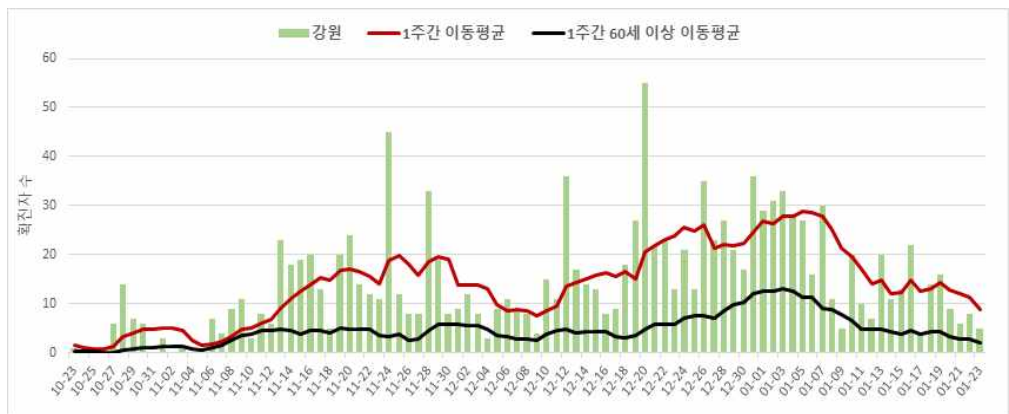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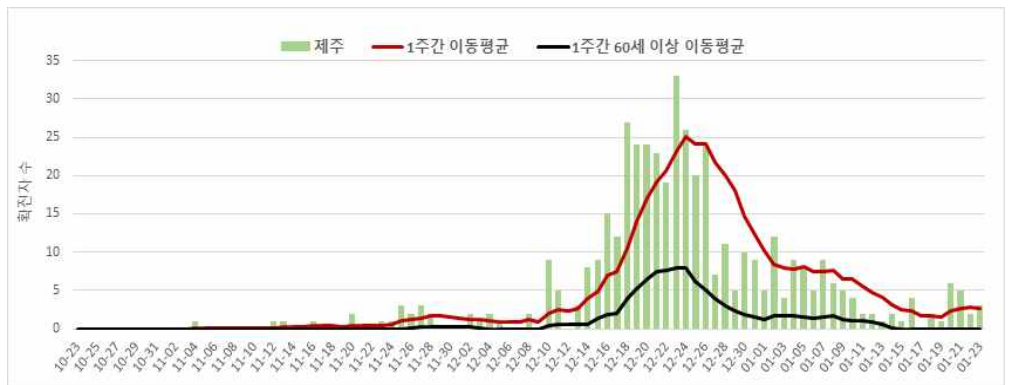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3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23. 0시 기준, 74,692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431 (100)	74,692 (100)	144.06
성별	남성	208 (48.26)	36,619 (49.03)	141.59
	여성	223 (51.74)	38,073 (50.97)	146.52
연령	80세 이상	23 (5.34)	3,728 (4.99)	196.29
	70-79	43 (9.98)	5,814 (7.78)	161.18
	60-69	62 (14.39)	11,765 (15.75)	185.44
	50-59	85 (19.72)	14,060 (18.82)	162.23
	40-49	59 (13.69)	10,705 (14.33)	127.60
	30-39	59 (13.69)	9,558 (12.80)	135.67
	20-29	49 (11.37)	11,500 (15.40)	168.96
	10-19	30 (6.96)	4,766 (6.38)	96.47
0-9	21 (4.87)	2,796 (3.74)	67.40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4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23. 0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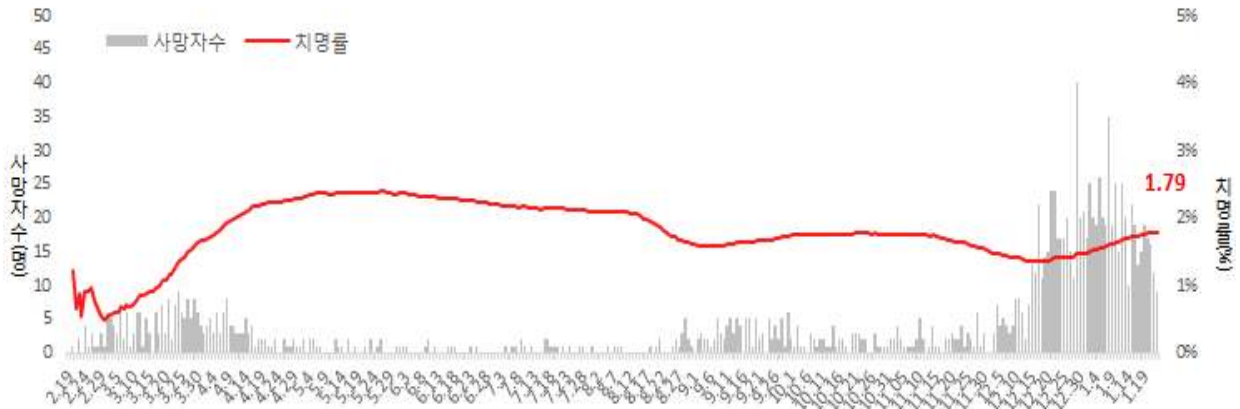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9 (100)	1,337 (100)	1.79
성별	남성	5 (55.56)	664 (49.66)	1.81
	여성	4 (44.44)	673 (50.34)	1.77
연령	80세 이상	4 (44.44)	754 (56.39)	20.23
	70-79	2 (22.22)	368 (27.52)	6.33
	60-69	2 (22.22)	158 (11.82)	1.34
	50-59	0 (0.00)	41 (3.07)	0.29
	40-49	1 (11.11)	10 (0.75)	0.09
	30-39	0 (0.00)	6 (0.45)	0.06
	20-29	0 (0.00)	0 (0.00)	0.00
	10-19	0 (0.00)	0 (0.00)	0.00
0-9	0 (0.00)	0 (0.00)	0.0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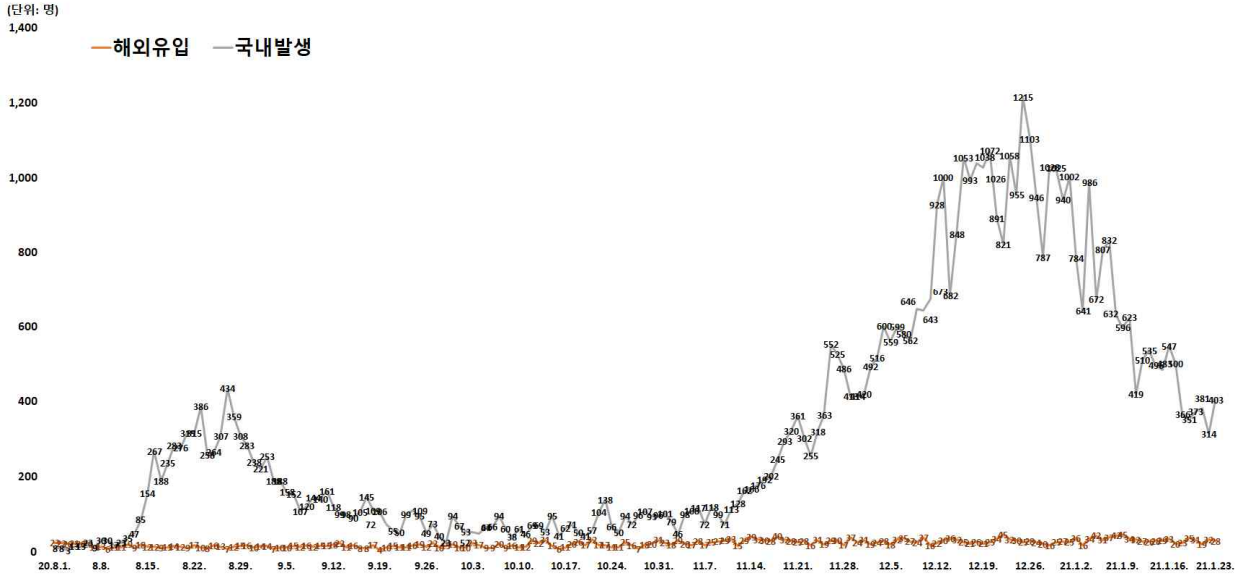
구분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계	401	395	390	374	380	374	360	352	343	335	323	317	299	297

구분	위중증	(%)
계	297	100.0
80세 이상	67	22.6
70-79세	119	40.1
60-69세	81	27.3
50-59세	21	7.1
40-49세	4	1.3
30-39세	3	1.0
20-29세	2	0.7
10-19세	0	0.0
0-9세	0	0.0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감염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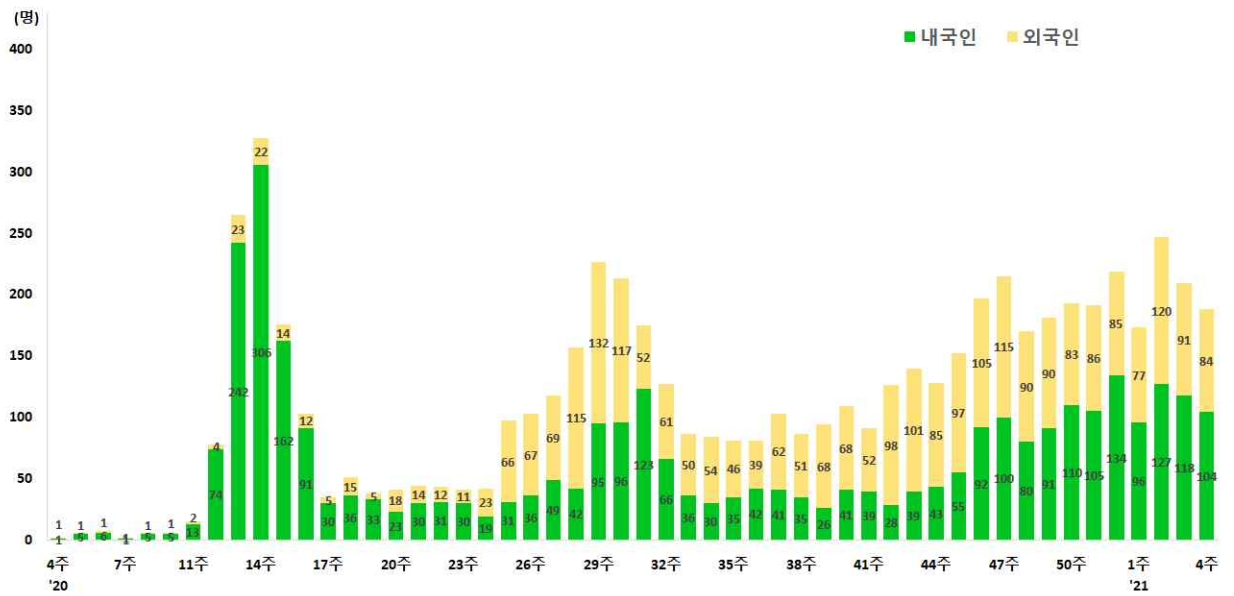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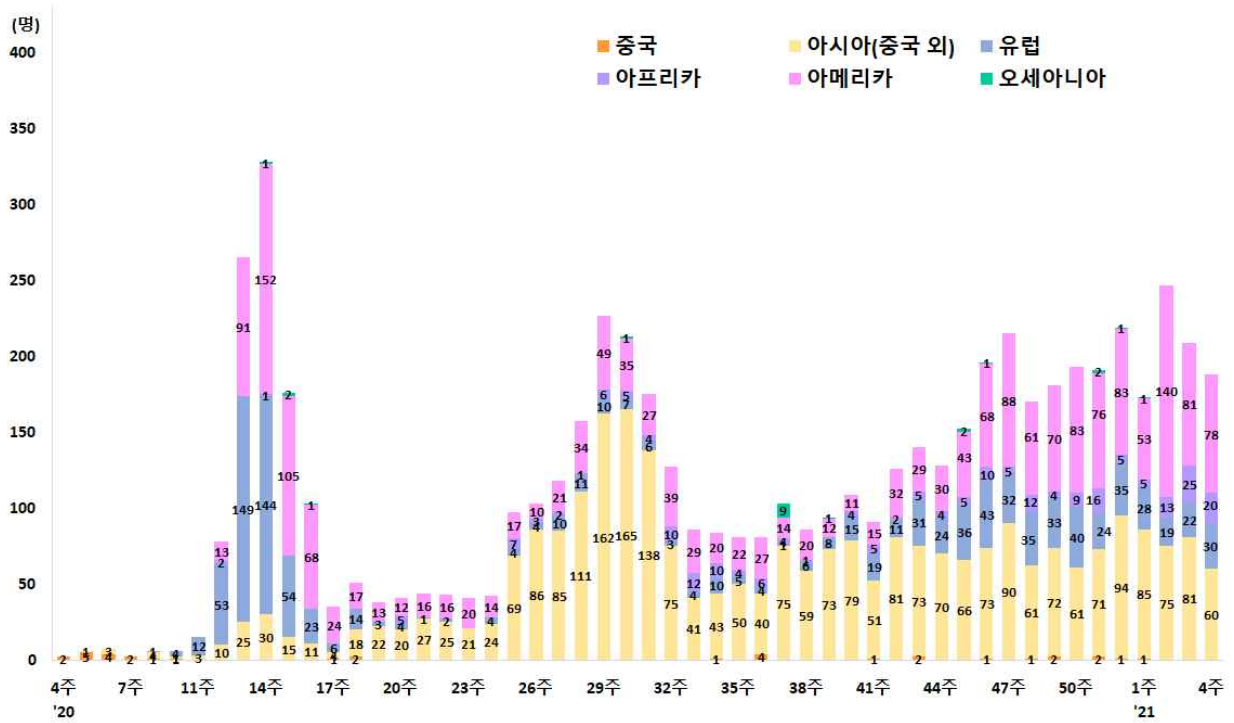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1.10일 0시~'21.1.23일 0시까지 신고된 6,698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관련	집단 발생	해외유입 관련				
서울	23,224	754	8,518	8	8,423	87	7,884	6,068	127	<p><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23명)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p><최근 발생 주요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35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24명) •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관련(126명) •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관련(125명)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224명) • 경기 양주시 육류가공업체 관련(104명) • 충북 괴안읍성곡산천묘안성사 병원 관련(46명) • 충북 청주시 요양시설 관련(110명) •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 관련(197명) •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 관련(144명)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60명) •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116명) •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 관련(145명) •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802명) • 울산 중구 선교단체 관련(166명) •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2 관련(128명)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08명) •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 관련(193명)
부산	2,530	109	1,457	12	1,390	55	610	354	33	
대구	8,223	120	6,065	4,512	1,546	7	1,139	899	22	
인천	3,640	189	1,718	2	1,707	9	1,139	594	12	
광주	1,478	106	1,090	9	1,075	6	163	119	7	
대전	960	47	467	2	464	1	287	159	1	
울산	911	77	649	16	629	4	115	70	2	
세종	174	24	77	1	75	1	43	30	1	
경기	18,888	1,307	7,088	29	6,985	74	6,585	3,908	117	
강원	1,596	60	863	17	845	1	440	233	6	
충북	1,493	81	787	6	774	7	399	226	4	
충남	1,960	130	951	0	950	1	533	346	17	
전북	1,009	92	690	1	688	1	134	93	7	
전남	709	63	488	1	478	9	91	67	10	
경북	2,851	122	1,965	565	1,400	0	472	292	18	
경남	1,886	134	1,108	33	1,047	28	389	255	32	
제주	516	30	323	0	322	1	98	65	3	
검역	2,644	2,644	0	0	0	0	0	0	12	
합계	74,692 (%)	6,089 (8.2)	34,304 (45.9)	5,214 (7.0)	28,798 (38.6)	292 (0.4)	20,521 (27.5)	13,778 (18.4)	431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6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 (1.23.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검사소 수 (개소) ¹⁾	익명검사(건)					확진자(명)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 ²⁾	
신규	0	26,700	25,708	0	992	0	73
서울	0	12,588	11,617	0	971	0	33
경기	0	12,398	12,377	0	21	0	38
인천	0	1,714	1,714	0	0	0	2
누계	130	1,268,990	1,249,455	4,235	15,256	44 ³⁾	3,795
서울	52	612,471	606,110	1,485	4,860	16	1,978
경기	70	549,743	536,829	2,719	10,168	27	1,536
인천	8	106,776	106,516	31	228	1	281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29건, 음성 15건

7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1.17.~1.23.)

구분	1.17.	1.18.	1.19.	1.20.	1.21.	1.22.	1.23.	주간누계	총 누계
계	45,836	37,980	72,702	71,747	66,099	65,649	74,184	434,197	6,598,697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 ¹⁾	29,020	25,930	53,106	51,804	45,478 ⁴⁾	44,618	47,484	297,440	5,329,707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건) ²⁾	16,816	12,050	19,596	19,943	20,621	21,031	26,700	136,757	1,268,990
신규 확진자 수(명)	520	389	386	404	400 ⁴⁾	346	431	2,876	74,692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명) ³⁾	124	67	49	67	45	55	73	480	3,795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 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4) (오류 정정) 중복 집계 오류 정정 : 검역 -1명(1.21일 0시 기준)

붙임 2 |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68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미국	24,225,155	402,803	187,919	4,368	1.66	7,318.78
인도	10,625,428	153,032	14,545	163	1.44	769.96
브라질	8,638,249	212,831	64,385	1,340	2.46	4,063.15
러시아	3,677,352	68,412	21,513	580	1.86	2,520.46
영국	3,543,650	94,580	37,892	1,290	2.67	5,218.92
프랑스	2,939,128	71,607	22,551	346	2.44	4,500.96
스페인	2,456,675	55,041	17,423	80	2.24	5,249.31
이탈리아	2,428,221	84,202	14,055	521	3.47	4,013.59
독일	2,106,262	50,642	17,862	859	2.40	2,513.44
콜롬비아	1,956,979	49,792	17,908	390	2.54	3,844.75
아르헨티나	1,831,681	46,216	12,112	150	2.52	4,052.39
멕시코	1,688,944	144,371	20,548	1,539	8.55	1,310.27
터키†	1,591,878	24,487	-	-	1.54	1,888.35
폴란드	1,464,448	34,908	6,693	347	2.38	3,874.20
남아프리카공화국	1,380,807	39,501	11,381	647	2.86	2,328.51
이란	1,354,520	57,150	6,204	93	4.22	1,612.52
우크라이나	1,182,969	21,662	5,348	163	1.83	2,707.02
페루	1,078,675	39,157	5,461	113	3.63	3,268.71
인도네시아	951,651	27,203	11,703	346	2.86	347.95
네덜란드	932,884	13,337	5,857	91	1.43	5,455.46
체코	924,847	15,130	7,488	157	1.64	8,643.43
캐나다	725,495	18,462	5,744	196	2.54	1,924.39
루마니아	703,776	17,554	2,878	69	2.49	3,665.50
벨기에§	686,827	20,620	2,571	48	3.00	5,920.92
칠레	685,107	17,702	4,367	108	2.58	3,586.95
스웨덴	542,952	10,921	4,946	4	2.01	5,375.76
일본	351,020	4,830	5,799	87	1.38	277.49
카자흐스탄†	219,527	2,956	-	-	1.35	1,167.70
말레이시아	172,549	642	3,170	12	0.37	532.56
중국	88,911	4,635	107	0	5.21	6.18
키르기스스탄	83,703	1,396	118	2	1.67	1,287.74
우즈베키스탄	78,272	620	53	0	0.79	233.65
싱가포르	59,235	29	38	0	0.05	1,003.98
호주	28,750	909	10	0	3.16	112.75
태국	13,104	71	309	0	0.54	18.77
베트남	1,546	35	2	0	2.26	1.59
대한민국	74,692	1,337	431	9	1.79	144.10

*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전일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수)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p>▶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p> <p>*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p> <p>-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p>
기타 모임·행사	<p>▶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p> <p>*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p> <p>▶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p>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p>▶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p> <p>(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p>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p>▶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p> <p>▶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p> <p>▶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p> <p>*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p>
노래연습장	<p>▶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p> <p>▶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p> <p>▶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p> <p>*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p> <p>▶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p>
실내 스탠딩공연장	<p>▶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p> <p>▶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p> <p>▶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p>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p>▶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p> <p>▶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p> <p>▶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p> <p>▶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사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p>
홀덤편	▶ 집합금지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실내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내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내 4명까지 허용 ▶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직업훈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두 칸 띄우기
PC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트·상점 (30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내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내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등교	▶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p>▶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p> <p>*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p> <p>-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p>
기타 모임·행사	<p>▶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p> <p>*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p> <p>▶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p>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p>▶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p> <p>▶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p> <p>▶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p>
노래연습장	<p>▶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p> <p>▶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p> <p>▶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p> <p>▶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p>
실내 스탠딩공연장	<p>▶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p> <p>▶ 음식섭취 금지</p> <p>▶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p>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p>▶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p> <p>▶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p> <p>▶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p> <p>▶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사·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p>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출입점	▶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마트·상점 (30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u> ▶ <u>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u> ▶ <u>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u> ▶ <u>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u> ▶ <u>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u>
파티룸	▶ <u>집합금지</u>
국공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u>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 (기본원칙)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부득이하게 고향·친지 집 방문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머무르는 시간은 짧게,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한 방역수칙

- ①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영상 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하기
- ② 외출 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두기
 - * 65세 이상 어르신, 당뇨병, 고혈압 등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의 경우 외부인 방문 자제
- ③ 최소 1일 3회(1회당 10분)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
- ④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 ⑤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검사 받기

불가피하게 이동할 때

- ▶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고향·친지 방문 등 하지 않기
 - * 증상 있는 경우 즉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여 검사받기
- ▶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
- ▶ 휴게소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마스크 상시 착용
- ▶ 휴게소에서도 사람 간 간격 2m(최소 1m) 이상 유지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 ▶ 가급적 좌석은 사전 온라인 예약,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 우선하여 이용
 - * 좌석 예매 시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매
- ▶ 마스크 상시 착용, 대화는 자제
- ▶ 지정된 장소에서만 음식 섭취, 기차·버스 안에서 먹을 간식 구입은 자제
- ▶ 흡연실, 화장실 줄 설 때 등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 두기

기차·버스 등 안에서

- ▶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 음식 섭취하지 않기
- ▶ 대화 및 전화 통화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대한 짧게 통화

○ 고향 집에서

실천할 것

- ▶ 5인 이상 모임 금지
- ▶ 고향·친지 집 방문 시, 머무르는 시간(기간)은 가급적 짧게
- ▶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히
- ▶ 집안에서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
- ▶ 직계가족만 만날 것을 권고
- ▶ 식사 시에는 개인 접시와 배식 수저 등 사용하여 덜어 먹기
- ▶ 반가움은 악수·포옹보다는 목례로 표현하기
- ▶ 하루에 3번 이상 자주 환기하기
- ▶ 손이 많이 닿는 곳(리모컨, 방문 손잡이, 욕실 등)은 하루에 1번 이상 소독하기

피할 것

- ▶ 가족·친지 간 밀폐·밀집·밀접 장소(유흥시설, 노래방 등)에는 가지 않기
- ▶ 직계가족 외의 방문은 자제하기
- ▶ 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침방울 튀이 발생하는 행동은 자제하기

○ 성묘·봉안시설 등 방문할 때

실천할 것

- ▶ 혼잡하지 않은 날짜와 시간 선택하기
- ▶ 최소 인원으로 가서 가급적 짧은 시간 머무르기
- ▶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 ▶ 줄 설 때, 이동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최소 1m) 이상의 거리 두기

피할 것

- ▶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추모관 방문 등 하지 않기
- ▶ 명절기간 동안 봉안시설의 제례실 이용하지 않기
- ▶ 실내에서는 음식 섭취하지 않기

○ 귀경·귀가 후

- ▶ 귀가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관찰 및 외출 자제
- * 귀가 후 열이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여 검사받기

모임·여행 할 때

○ 여행 전

실천할 것

- ▶ 개인 또는 가족(동거가족) 등 소규모(5인 이상 모임은 금지)로 계획하여 여행하기
- ▶ 다중이용시설, 여행지 등은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 예약 방문하기
 - 일정 및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하기
- ▶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하고, 차량 내 자주 접촉하는 표면 소독 후 충분한 환기하기
- ▶ 대중교통 및 관광지 입장권 예약과 발권은 온라인서비스 우선 활용하기
 - 좌석은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약하기

피할 것

- ▶ 밀폐·밀집·밀접 장소는 가지 않기
- ▶ 필요한 간식·물 등은 사전에 준비하여 가급적 휴게소 들리지 않기
 - 휴게소 방문 시 가급적 짧은 시간동안 머무르기

○ 여행 중

실천할 것

- ▶ 자주 손 씻기
- ▶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 피할 수 있도록 동선 최소화
- ▶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 ▶ 실내, 교통수단 내에서 꼭 필요한 통화는 마스크 착용상태에서 작은 목소리로 하기
- ▶ 휴게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시간만 머무르기(포장·배달 활용)
- ▶ 주문, 예약 등은 가능한 무인기계 사용, 타인과 대면 시 손소독제 사용
- ▶ 식사 시 대화 자제,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피할 것

- ▶ 밀폐·밀집·밀접하기 쉽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는 가지 않기
- ▶ 불가피하게 방문 시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붙임 6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은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 ‘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 ... 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